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기관의장

람

제1650호 2022. 1. 24.(월)

차 례

훈 령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370호 인천광역시 서구 청원경찰 복무규정 일부개정 규정 — 1

고 시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14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3-2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 5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16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 8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37호 「2022년 공동주택관리사업」 신청 안내 공고 ——— 11

인천광역시 서구 청원경찰 복무규정 일부개정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22년 1월 24일

인천광역시 서구 훈령 제370호

인천광역시 서구 청원경찰 복무규정 일부개정 규정

인천광역시 서구 청원경찰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반장 및 조장의 임무수행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며, 수당 지급액은 별표 1과 같다.

제16조제6호를 삭제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퇴직준비휴가) ① 청원경찰 정년퇴직 예정자에게 별표 2에 따른 퇴직준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퇴직준비휴가는 정년퇴직 해당 연도에 부여하며, 퇴직 전 3개월의 기간 안에서 사용할 수 있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청원경찰 반장 및 조장 수당 지급액(제15조제4항 관련)

구 분	수당 (월 지급액)
반장	80,000원
조장	60,000원

[별표 2]

청원경찰의 퇴직준비휴가(제20조의2 관련)

근속연수	휴가일수
1년 이상 10년 미만	5일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
20년 이상	15일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22-14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3-2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1988-1406호(1988.12.2.)로 도시관리계획 결정한 도시계획시설 **【도로: 소로3-2호선, 사업명: 석남동 소로3-2호선 도로개설공사】**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변경)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서구청(도시계획과, ☎032-560-4763)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2. 1. 24.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변경사유

-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2.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 없음)

-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222-47번지 일원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 없음)

-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3-2호선)
- 명칭: 석남동 소로3-2호선 도로개설공사

4. 사업의 규모(변경 없음)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	
				결정	금회	결정	기시행	금회		잔여
도로	소로	3	2	6	6	320	-	320	-	2,088

5.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없음)

- 성명: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서구청)

6.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

- 기정: 실시계획 인가일 ~ 2021. 12. 31.
- 변경: 실시계획 인가일 ~ 2023. 12. 31.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

- 따로 붙임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사업명 : 석남동 소로3-2호선 도로개설공사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지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변경 없음	석남동	223-673	유	1,080	200	황용*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223-***				
2	변경 없음	석남동	223-715	유	8	8	박준* 외1	서울 서초구 서초동 1452-** ***				
3	변경 없음	석남동	223-714	잡	5,177	1,666	김종*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130-** **				
4	변경 없음	석남동	222-45	잡	4,110	162	국	기획재정부				
5	기정	석남동	222-47	잡	30	30	차혜* 외3인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70-25**				
	변경	석남동	222-47	잡	30	30	차수*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 ***				
6	기정	석남동	222-46	잡	7	7	차혜* 외3인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70-25**				
	변경	석남동	222-46	잡	7	7	차수*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 ***				
7	기정	석남동	222-51	잡	15	15	차혜* 외3인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70-25**				
	변경	석남동	222-51	잡	15	15	차수*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22-16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1. 24.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부여·폐지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북항배후로 1-40 외 9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폐지)사유	도 로 명 고 시 일	도 로 명 부 여 사유
		별 도 열 람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30)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2.1.24일자로 고시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 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 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조서

고시일 : 2022-1-24

연번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435-2	인천광역시 서구 목항배후로 1-40 (원창동)	20190121	목항 목배후단지예 조성된 도로	
2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21-5	인천광역시 서구 비즈니스로 191 (청라동)	20201012	지구단위계획의 국제업무단지 지역	
3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435-7	인천광역시 서구 목항배후로 30 (원창동)	20190121	목항 목배후단지예 조성된 도로	
4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815	인천광역시 서구 독정로 47 (당하동)	20110707	인근 자연부락인 "독정마을"의 이름을 반영	
5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759-1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로13번안길 48 (오류동)	20090922	오류로13번길의 안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6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716-5	인천광역시 서구 단봉로 148 (오류동)	20090922	봉수대로에서 나와 단봉초등학교 앞을 지나는 도로	
7	인천광역시 서구 금곡동 741-14	인천광역시 서구 소담1로 70 (금곡동)	20191223	소담로에서 첫 번째 분기되는 도로	
8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46-38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한내로173번길 5 (청라동)	20101111	도로의 기점이 접한 대로, 로의 기초번호로 도로명부여	
9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8-81, 8-82	인천광역시 서구 청서로 84 (청라동)	20101111	청라대로 서쪽에 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조서

고시일 : 2022-1-24

연번	도로명주소	폐지사유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서구 북항로31번길 77 (석남동)	건축과-1986(2021. 1. 13.)호에 의거	20131202	북항로 시작지점에서 약31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2-137호

「2022년 공동주택관리사업」 신청 안내 공고

우리 구 관내 공동주택 단지(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과 도시환경 정비를 위하여 2022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및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신청 안내를 하고자 공고하오니, 공동주택 입주자(소유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2022. 1. 24.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공동주택관리사업 신청 안내문

□ 신청대상 및 내용

○ 지원대상: 관내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택) 단지

구분	사업명(택일)	지원신청단지
1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사용검사일 기준 10년 이상 경과된 단지 (2011. 12. 31.이전 준공 / 의무 + 임의단지)
2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	사용검사일 기준 20년 이상 경과된 단지 (2001. 12. 31.이전 준공 / 임의단지)

○ 사업내용

구분	사 업 내 용
공통	- 단지 내 도로 및 그 부속시설 관리, 유지보수 - 경로당 보수, 상·하수도 시설 관리 등 - 범죄예방을 위한 무인택배함, 방범용 CCTV설치(단지 내) - 경비실 편의를 위한 기본시설 설치 -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보수 등

사업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
우선 고려 대상	- 어린이놀이시설 바닥재 소독 및 교체 우선 고려 [예산 4천만원 범위 내에서 집행 예정]	- 관리업무 종사자의 적법한 휴게시설(건축물대장 상 등재 등) 개선사업 우선 고려

※ 모든 수혜사업은 향후 10년 이내 동종사업에 지원하지 않습니다.

○ 신청기간: **2022. 1. 24.(월) ~ 3. 4.(금)**

○ 신청장소: 서구청 주택과 주택관리팀(☎ 560-3002, 3003)

○ 신청자: 해당 공동주택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장 또는 입주자 대표

구비서류

-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또는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 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동의서(등기 상 소유자) 1부
- 견적서 3부

지원규모

○ 연간 보조금 지원 상한금액(지원조례시행규칙 별표1)

총사업비	지 원 기 준		비 고
	의무관리	임의관리	
7백만원 이하	전 액	전 액	
7백만원 초과 ~ 2천만원이하	총사업비 x 75/100범위내	총사업비 x 85/100범위내	
2천만원 초과 ~ 3천만원이하	총사업비 x 70/100범위내	총사업비 x 80/100범위내	
3천만원 초과 ~ 4천만원이하	총사업비 x 65/100범위내	총사업비 x 75/100범위내	
4천만원 초과 ~ 5천만원이하	총사업비 x 60/100범위내	총사업비 x 70/100범위내	

※ 총사업비가 5천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단지별 보조금은 의무관리 단지는 3천만원, 임의관리 단지는 3천5백만원으로 한다.

※ 공동주택 관리대상 구분

- 의무관리: 30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사용 공동주택
- 임의관리: 의무관리가 아닌 소규모 공동주택

2.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신청 안내문

□ 신청 대상 및 내용

- 신청대상: 관내 소규모 공동주택(임의관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택) 중
사용검사일 기준 20년 이상 경과된 단지(2001.12.31. 이전 준공)
- ※ 공동주택 관리대상 구분
 - 의무관리: 300세대이상 이상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사용 공동주택
 - 임의관리: 의무관리가 아닌 소규모 공동주택
- 선정방법: 관리대상 중 노후도 및 준공년도 등을 감안하여 단지 선정
- 사업내용: 공동주택 안전점검,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등
- 신청기간: **2022. 1. 24.(월) ~ 3. 4.(금)**
- 신청장소: 서구청 주택과 주택관리팀 (☎ 560-3002, 3003)
- 신청자: 해당 공동주택 단지의 입주자 대표

□ 구비서류

-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신청서 1부(붙임참조)
- 현장사진 및 입주자등 동의서류(소유자, 거주자 현황 포함)